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2. 1. 1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1. 11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. 1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로과장 홍지선)

□ 제안이유

○ 주택을 통행하기 위한 비영리목적인 도로점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전액감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개정시 주택, 상가복합건물의 경우 점용료 부과를 주택은 제외하고 점포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인가? ○ 도로점용허가를 건축허가시에 해주고 있는가? ○ 비영리목적인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현재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? ○ 현재 체납점용료에 대해 연체료가 없어 장기 체납자가 많은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네 ○ 현재 민원허가과에서 건축허가시 하고 있음 ○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부과를 해야 함으로 개정하는 것임 ○ 체납시 10%의 가산금이 붙고 있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57호
의결년월일	20021. 1. 19 (제93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1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주택을 통행하기 위한 비영리목적인 도로점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를 전액감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

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.....

<p>1~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